

-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5. 삭제 <2015.7.24.>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1.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 1)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 2) 생활안전활동의 종류
 -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5. 그 밖에 방지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7. 「소방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소방자동차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소방자동차의 화재진압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②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주차하는 행위
- ③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④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9. 「소방기본법」상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옳게 연결한 것은?

- 가. (㉠)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나. (㉡)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다. (㉢)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 자를 말한다.
- 라. (㉣)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마. (㉤)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바. (㉥)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 ㉤ ㉥

- ①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조장
- ②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대장
- ③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조장
- ④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해설]

정의

-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설] 소방특별조사

- 1) 소방특별조사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2) 소방특별조사 실시사유
 -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4)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권자 : 소방본부장
- 5)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소방기술사
 - 3. 소방시설관리사
 -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설명으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가. 화재경계지구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나. 특수가연물의 쌓는 높이는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라. 소방청장 등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일부터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	㉥
①	7	7	14	40	15	30
②	7	10	15	60	15	20
③	10	7	14	40	10	20
④	10	10	15	60	10	30

해설] 답안참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임시소방시설

-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가. 소화기
-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가. 소화기: 건축허가등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1) 연면적 3천㎡ 이상
-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1) 연면적 400㎡ 이상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격납고
- ② 연면적 600m²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전산실
- ④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해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②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③ 연면적 10만m²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① 설치 : 소방청
- ② 구성 :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 ③ 위원장 : 소방청장이 위원중 위촉
- ④ 위원이 될 수 있는 자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⑤ 심의사항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 ③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²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해설]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 ① 10년 ② 15년 ③ 20년 ④ 25년

해설] 내용연수 대상

- 1) 대상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 2) 내용연수 : 10년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대 ② 방열복
③ 공기호흡기 ④ 인공소생기

해설] 구조대는 피난기구이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2) 공기호흡기
- 3) 인공소생기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① 소화기 및 시각경보기
- ②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 ③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 ④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해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2) 설치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3)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 : 시도의 조례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 | ㉡ |
|-----------|---------|
| ① 스프링클러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 ② 포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 ③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 ④ 포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해설]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7.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8. 연결살수설비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9.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

	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5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린생활시설 - 한의원, 치과의원
- ② 문화 및 집회시설 - 동물원, 식물원
- ③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 ④ 숙박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해설]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